

이사회 운영규정

신평제약 주식회사

이사회 운영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신풍제약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의 이사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본조 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의 임기는 그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에 만료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 까지로 한다.
-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정관 제38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조 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④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 일시를 정하고 그 3영업일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각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때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

【법규 - 정관상 의무사항】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재무제표의 승인
- 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4) 이익의 배당
- 5) 정관의 변경
- 6) 자본금의 감소
- 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(상법제 519조)
- 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,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10) 사후설립
- 11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12) 이사의 보수
- 13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14) 자기주식의 취득
- 15) 주식배당 결정

- 16)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
- 17)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18) 주식의 소각
- 19) 주식의 포괄적 교환
- 20) 주식의 포괄적 이전
- 2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22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주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【법규 - 정관상 의무사항】

- 1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
- 2) 자산재평가의 실시 및 신고

【기타 주요 경영에 관한 사항】

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【법규 - 정관상 의무사항】

- 1) 자기주식의 처분, 소각
- 2) 신주의 발행
- 3) 사채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
- 4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- 5) 신주의 제 3자 배정
- 6) 중간배당의 실시
- 7)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거래

- 8)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
- 9)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검토

【 기타 주요 재무에 관한 사항 】

- 1) 회사 자기자본의 2.5% 이상 상당의 해외직접투자
- 2)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이나 주식예탁증서의 상장
- 3) 회사 자기자본의 2.5% 이상 상당액의 차입
- 4) 건별 회사 자기자본의 2.5% 이상 상당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
- 5) 건별 회사 자기자본의 2.5% 이상 상당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
- 6)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

4.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

- 1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2) 대표이사(또는 내부회계관리자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검토
- 3)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검토

5. 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

【법규 - 정관상 의무사항】

- 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2)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 선임
- 3)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. 다만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예외로 한다.
- 4) 이사와 경업, 동종업종 타사의 임원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
- 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다만, 정관 제45조의3 제8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음으로 예외로 한다.
- 6) 이사의 직위·직무의 위촉 및 해촉

【기타 주요 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】

- 1) 이사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(운영기준)의 개폐

6. 기타

- 1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,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4. 회계기준의 제·개정 기준서에 따른 영향
5. 비정상적인 거래나 회계처리
6. 주요한 공시항목

제 9 조 (위임)

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제10조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43조2의 규정에 따르되, 그 중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6장(감사위원회)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- ② 제1항 및 해당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,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하여도 정관 제43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때 “이사회”는 “이사회 내 위원회”로, “이사”는 “위원”으로 본다.

제 11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- ① 이사회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기밀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
제 13 조 (사후승인)

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

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4 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5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